

2021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9월 24일 (금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88 본사 별관 3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 1) 제1호 의안 : 합병 계약 체결의 승인 건
- 2)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에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6.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안내

상법 제 529조의 3에 의거하여 제1호 의안 합병 계약 체결의 승인의 건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지 및 별첨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별 첨]
1. 2021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
 2. 합병의 개요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4. 정관 변경(안)

2021년 09월 0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88(만오리)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태 (직인생략)

[별첨. 1]

2021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귀중

수 임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 _____은 귀사의 주주로서 2021년 09월 24일 개최되는 2021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
위에 기재한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본인이 귀사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
식수 및 수임인에게 위임되는 주식의 내용 및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소유주식 및 의결위임 주식내역

구 분	주 식 수
소 유 주 식 총 수	보통주 _____ 주
위 임 주 식 수	보통주 _____ 주

2. 위임한 권한의 내용

- 2021년 09월 24일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주주의 제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
-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21년 09월 일

위 임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2]

▣ 합병의 개요 ▣

1. 합병의 목적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는 초대형 고층량 플랜트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관 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나우1호 유한회사(이하 "피합병회사")는 재무구조 개선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존속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제고, 대외신뢰도 강화, 효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능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합병의 방법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가 나우1호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나우1호 유한회사는 해산합니다.

3. 합병의 요령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피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0원) 1주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99주를 교부합니다.
 피합병회사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있어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교부금 대신 해당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합병비율

가. 합병비율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 : 1.9897439

나. 합병비율의 산출근거

외부평가기관이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잉여흐름할인법(FCFF, Discounted Free Cash Flow to Firm)에 따라 산출된 합병회사의 주식가치에 근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3)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해당사항 없음"

(4)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 조의 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1년 09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채권자보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지조건

제16 조 (계약의 변경, 해지)

- ①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본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전제사변,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지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 ③ "갑"과 "을"은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별도 협약은 본 합병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되, 상호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 협약이 우선한다.

(6)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 6,287원
- 반대회사 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결의일(임시주총소집)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 및 권리주확정 기준일 공고	2021년 08월 12일
합병 계약 체결일	2021년 08월 26일
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1년 08월 27일
주주명부폐쇄 기간 (명의개서정지 기간)	2021년 08월 28일 ~ 2021년 09월 03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2021년 09월 09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21년 09월 10일 ~ 2021년 09월 23일
주주총회	2021년 09월 2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1년 09월 24일 ~ 2021년 10월 14일
합병기일	2021년 10월 28일
합병등기일	2021년 10월 29일

*상기일정은 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3]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안내 ▣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외결의에 반대하여 임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임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외 결의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외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외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 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1) 당 회사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상법 제374 조의2 제 항에 의거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	6,287원
산출근거	2021.6.30 현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주당 6,287원(액면가 500원)으로 평가(FCFF 평가)되었습니다.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닐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합니다.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행사절차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21년 08월27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21년 09월 23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외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위탁기관인 한국에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에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주식매수 청구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9월 24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위탁기관인 한국에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88 (만오리)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2) 기타사항

(가) 주식매수청구권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 지급 방법 : 주주 신고계좌로 이체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나우1호 유한 회사와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 주 명		주주번호	
소 유 주 식 수	보 통 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 통 주 :		

주 소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귀하

----- 절 취 선 -----

주식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나우1호 유한회사 와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명		주주번호	
소 유 주 식 수	보 통 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 통 주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보 통 주 :		

주 소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귀하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p>제2조 (목적)</p> <p>1. ~ 11. (생략)</p> <p>12.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p> <p>13. 전 각호에 관련된 모든 부대사업 일체</p>	<p>제2조 (목적)</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부실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p> <p>13.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자금차입 또는 채무차입, 기타 다른 활동</p> <p>14.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p> <p>15. 전 각호에 관련된 모든 부대사업 일체</p>	<p>합병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p>
	<p>부 칙</p> <p>(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시행일 (합병등기일)</p>